

< 구조자문의견서 >

1. 자문의 목적 :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의 옥상(투시형) 난간에 대한 향후 보완기준을 위한 자문
2. 현장조사일시 : 2019.12.05.
3. 현장조사위치 : 성북구 삼선동 5가 28-8외 3개소

위 현장조사 및 귀 공사에서 제공한 별도자료를 참조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옥상(투시형)난간의 향후 보완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제출합니다.

- 아 래 -

일조면에 설치하는 옥상난간의 경우 RC 또는 조적형 난간기둥이 없는 금속재 투시형 난간의 설치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은 설치상세도에 따라 흔들림없이 안전하게 설치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, 해당 내용 및 기준을 귀 공사의 '설계도서 검토 가이드라인' 및 '매입주택 시설물 기준'등에 해당 내용 및 기준을 반영조치 필요하다고 판단됨

2019.12.09.

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(구조분야) 김 점 한

